

<p>우 法規에 違背되어 條例施行日을 修正코자 함.</p> <p>主要骨子로는 附則 條例施行日을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下水道使用料 料率은 96年 3月 檢針分부터 適用한다, 그 다음에 修正案으로서는 여러분 油印物에 보면 改正案하고 이렇게 修正案으로 되어 있습니다, 附則에서, 修正案은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되 下水道使用料 料率은 96年 3月 檢針分부터 適用한다라고 제가 說明을 드렸습니다.</p> <p>여러분께서 제 修正案에 同意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閔相今 그러면 黃好淳委員께서 動議한 修正案에 대해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우리 魯泰塾委員 말씀하세요.</p> <p>○魯泰塾委員 參考로 3月 告知分이다 하면 1月 1日부터 2月 末日까지의 使用量을 3月에 檢針을 해서 3月附로 告知書를 發付한다는 얘기인가요?</p> <p>○下水局長 崔慶堉 그렇습니다.</p> <p>○魯泰塾委員 그러면 納期는 4月 中입니까? 3月입니까, 4月입니까?</p> <p>○下水局長 崔慶堉 3月末입니다.</p> <p>○委員長 閔相今 魯泰塾委員 理解가 가셨습니까?</p> <p>○魯泰塾委員 알았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閔相今 그러면 黃好淳委員께서 發議한 修正動議案으로 本 案件을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그러면 本 案件을 修正案 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</p>	<p>한다)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규칙(이하 “법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6. “빗물펌프장”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·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.</p> <p>7. “차집관거”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</p> <p>8. “중계펌프장”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·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.</p> <p>9. “개량”이라 함은 하수도를 전면보수·재축·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제2조의2 내지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2조의2(공공하수도관리의 범위) 법 제18조 및 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구청장의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 : 한강변 차집관거(다만, 천호대교에서 자양빗물펌프장구간 제외)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, 차집관거 준설(다만, 복개천 및 그 상류구간 제외). 2. 구청장 : 하수관거, 차집관거(다만, 시장 관리분 제외), 중계펌프장·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 시설의 설치·개량·수선 유지관리와 복개천 및 그 상류구간의 차집관거 준설 <p>제2조의3(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) ①시장이 부담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 2. 차집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의 설치·개량·
--	---

<p>수선 및 유지관리비. 다만, 복개천 및 그 상류 구간의 차집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 준설비용 제외.</p> <p>3. 내경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.7m² 이상 하수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의 설치·개량비</p> <p>4. 빗물펌프장의 설치·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용</p> <p>5. 청계천(광교~성북천 합류점간) 유지관리비</p> <p>6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시설 사업비</p> <p>②구청장이 부담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내경 900mm 또는 통수단면적 0.7m² 미만 하수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</p> <p>2.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.7m² 이상 하수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</p> <p>3. 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</p> <p>4.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기타 공작물과 하수도부대시설의 설치·개량·수선 및 유지관리비</p> <p>5. 복개천 및 그 상류구간의 차집관거(중계펌프장 포함) 준설비용</p> <p>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예산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2조의4(관리의 특례) 구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관리구청장이 관리하고,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를 경우등 특별한 경우는 다수 수혜 구청장이 관리하며, 그 관리구분은 별표4에 의한다.</p> <p>제4조를 삭제한다</p> <p>제5조의 제목 중 “신청”을 “신고”로 하고, 동조제4항 중 “하수도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을 “영”으로 한다.</p> <p>제6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</p>	<p>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재설치·개조·수선 또는 철거·폐쇄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⑥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는 사용개시 공고일 부터 3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</p> <p>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지하수·하천수 등”을 “지하수·하천수·온천수 등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③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·이용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신고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③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 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.</p> <p>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④공공하수도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.</p> <p>제17조제1항 중 “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”를 “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동조 중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.</p> <p>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17조의2(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) ①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하수도사용개시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(이하 “계측기”라 한다)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측기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
--	---

4 (第13回-水資源管理第4次)

<p>②제1항의 경우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·관리하여야 하고, 시장에계봉인요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p>1.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</p> <p>2.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</p> <p>3.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않은 것</p> <p>③시장은 하수도 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,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④계측기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제18조제1항 중 “병기”를 “함께”로 하고,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</p>	<p>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·징수한다.</p> <p>제28조 중 제2호는 삭제하고,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2.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29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. <별표1> 중 가목 및 <별표3>을 별지와 같이 하고, <별표4>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 제2조의3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, 하수도사용료는 1996년 1월고지분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<별표1></p>
---	--

가. 하수도사용료. 요율표

구분 업종	1개월 기본요금		초 과 사 용 료	
	기본수량(m ³)	기본요금(원)	기본수량(m ³)	1m ³ 당(단가)(원)
가 정 용	15	490	16- 30	60
			30- 50	165
			51 이상	330
영 업 용 1 종	15	490	16- 30	60
			30- 50	165
			51 이상	275
영 업 용 2 종	15	490	16- 30	60
			30- 50	165
			51-100	279
			101-500	419
			501 이상	496
육 탕 용 2 종	200	80,000	201-300	480
			301-500	650
			500 이상	750
육 탕 용 1 종	사용수량 1m ³ 당 104원			
공 공 용	사용수량 1m ³ 당 93원			
공 중 용	사용수량 1m ³ 당 36원			
산 업 용	사용수량 1m ³ 당 95원			

주 1.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.

<별표3>

수질하수도사용료
1. 대상항목 : BOD 또는 COD, SS

2. 산정기준

가.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

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.(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)

나.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

다.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.

3. 산정방법
 수질하수도사용료=오염부하량[수질초과농도(mg/l)×시간당 폐수배출량(m³)]

$$\frac{1}{1,000} \times \text{kg단가} \times 1\text{일 조업시간} \times 30\text{일}$$
 ※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써 분(分)으로 표시

〈별표4〉

구경계 및 수혜구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구분

명칭	위치	해당구	관리	한계
하수관거 (관로번호 3020, 3025, 3028)	대방역(노량진)~여의교 하류	동작구 영등포구	동작구	주관로
정계천	광교(조흥은행본점 앞)~ 동대문시장(종로5가동 경계)	종로구 중구	종로구	전체
"	동대문시장~난계로 교차점(삼일APT 124동)	"	중구	"
"	난계로 교차점~성북천 합류점	동대문구 성동구	동대문	"
성내 빗물펌프장	송파구 방이동 88-13	강동구 송파구	강동구	빗물펌프장 및 유수지
장안·전농 빗물펌프장	성동구 송정동 74 (중랑하수처리사업소내 위치)	동대문구 성동구	동대문구	"

○委員長 閔相今 委員 여러분, 그리고 下水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,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

'9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쉽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새해에 보다 알찬計劃으로 좋은 結實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委員 여러분과 下水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서울特別市議會 第13回 定期會 第4次 水資源管理委員會 會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散會를 宣布합니다.
 (議事棒 3打)
 (10時 31分 散會)

崔鍾德 金天柱
 ○專門委員 張奉萬
 ○出席公務員 下水局長 崔慶竣

○出席委員
 閔相今 黃好淳 金明炫
 羅太均 魯泰塾 宋德華
 申炯植 鄭福辰 宋仁回